

C2012-54-2 | 2012. 1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 20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김 광 선 연구위원  
채 종 현 전문연구원  
윤 병 석 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연구 담당**

김 광 선	연 구 위 원	연구총괄, 제1장, 제4~6장 집필
채 종 현	전문 연구원	제3장 집필
윤 병 석	연 구 원	제2장, 제4장 집필, 데이터 수집 및 정리

### **외부 집필진**

충남발전연구원	김정연 선임연구위원	선진국 농어촌 대중교통 정책 동향
	김원철 책임연구원	충청남도 대중교통 사례 연구

## 머리말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항목과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가적 기준이다. 정부는 농어촌 서비스기준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1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하여금 업무 위탁을 통해 그 이행실태를 매년 점검·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 업무위탁에 의해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연차별 공통 추진업무 부분인데, 이는 2011년도와 마찬가지로 점검통계와 이행 지수를 활용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는 것이다. 둘째는 연차별 특별 추진업무 부분으로 농어촌 도로·교통 분야에 대한 심화연구와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정 방안으로 구성하였다.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한 결과 2011년에 비해 이행 정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행실태가 향상된 세부기준 수가 29개, 정체인 세부기준 수가 3개, 그리고 하락한 세부기준은 4개로 나타났다. 주거 부문의 세부기준 이행실태가 전반적으로 향상된 반면, 교육, 복지, 응급, 문화 부문에서 각각 1개의 세부기준 이행 정도가 하락하였다. 그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나 각 지자체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사료된다. 이 외에 본 연구는 다양한 조사·분석을 통해 2013년에 시행될 농어촌서비스기준 수정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2012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 점검·평가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컸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농어촌 시·군의 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설문조사 등에 흔쾌히 응해 준 농어촌 주민,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으로 연구를 거들어 준 전문가들.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는 이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일 것이다. 깊이 감사드린다. 또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한다.

끝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정착되길 바란다.

2012.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동필

## 요 약

---

### 1. 연구의 목적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정부는 2011년 1월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항목과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가적 기준이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8개 부문의 31개 기준 항목으로 구성되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로 공표되었는데, 각 기준 항목은 ‘삶의 질 향상계획’의 계획주기와 맞물려 2014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이다.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기준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 공공서비스 공급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2011년부터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업무위탁을 통해 매년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다각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동 기준 제도의 개선 방안과 기준 이행 촉진 방안을 발굴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는 매년 공통으로 추진하는 연차별 공통 추진 업무와 현안과 관련된 주제 또는 부문을 집중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연차별 특별 추진 업무로 구분된다. 먼저, 2012년에도 2011년도와 마찬가지로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점검통계를 통해 각 항목별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였다. 또 이를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로 전환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종합적으로, 또 부문별·지역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를 위해

서는 공표통계와 관계부처 내부자료, 행정조사를 통한 자료 구득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표 1. 2011/20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추진 방법 비교

업무 구분	201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추진 방법	20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추진 방법
연차별 공통 추진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점검통계를 활용한 농어촌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식통계 구축</li> <li>② 부처 협조를 통한 통계 구득</li> <li>③ 자체 행정조사 실시</li> </ul> </li> <li>(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종합·부문별 이행지수</li> <li>② 핵심 이행지수</li> <li>③ 클러스터 분석</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점검통계를 활용한 농어촌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식통계 구축</li> <li>② 부처 협조를 통한 통계 구득</li> <li>③ 자체 행정조사 실시</li> </ul> </li> <li>(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종합·부문별 이행지수</li> <li>② 핵심 이행지수</li> </ul> </li> </ul>
연차별 특별 추진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삶의 질 향상 계획 반영 실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본계획 분석</li> <li>② 2011년 시행계획 분석</li> <li>③ 시도계획(충남), 시군계획(화천 군·장흥군) 심층 분석</li> </ul> </li> <li>(4) 사례지역 심층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시·군 단위 삶의 질 향상계획 분석</li> <li>② 기준 항목 관련 사업예산 분석</li> <li>③ 읍·면 단위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조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농어촌서비스기준 주요 부문별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농어촌 도로·교통 부문</li> </ul> </li> <li>(4)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농어촌서비스기준 현장 적합성 및 달성 가능성 조사</li> <li>② 농어촌 주민의 공공서비스 만족도 및 정책 수요 조사</li> </ul> </li> <li>(5)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모범사례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의 자료집 발간</li> </ul> </li> </ul>

연차별 특별 추진업무로는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별 심화연구의 하나로 농어촌 도로·교통 이용 실태와 정책 수요를 조사·분석하였다. 또 농어촌서비스기준 현장 적합성 및 달성 가능성 조사와 농어촌 주민의 공공서비스 만족도 및 정책 수요 조사를 통해 중·장기적인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13년 바로 수정·시행할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2012년 연차별 특별 추

진업무 중 도로·교통 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전문가 원고 위탁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농어촌서비스기준 중·장기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2종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의 검토 등을 통해 2012년 농어촌서비스 기준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이 외에도 2012년 연차별 특별 추진업무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주요 부문별로 국내 외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농어촌서비스기준 8대 부문별로 1가지 이상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총 20개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다만 이들 모범사례는 본 보고서에 담기보다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후 자료집의 형태로 별도 발간할 예정이다.

### 3. 주요 연구 결과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한 결과 2011년에 비해 이행 정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행실태가 향상된 세부기준 수가 29개, 정체인 세부기준 수가 3개, 그리고 하락한 세부기준은 4개로 나타났다. <표 2>와 같이 주거 부문의 세부기준 이행실태가 전반적으로 향상된 반면, 교육, 복지, 응급, 문화 부문에서 각각 1개의 세부기준 이행 정도가 하락하였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교육 과학기술부 소관의 폐교 항목,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독서 항목, 보건복지부 소관의 영유아 항목, 소방방재청 소관의 응급서비스 항목의 이행실태가 2011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이들 일부 기준 항목을 제외하고는 중앙행정기관별로 대부분의 소관 기준 항목의 이행실태가 전년도에 비해 향상되었다.

표 2. 2011/2012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비교

분야	항목	달성 기준(목표치)	2011			2012		
			달성률 (%)	달성 시·군 수	단순평균 달성률 (%)	달성률 (%)	달성 시·군 수	단순평균 달성률 (%)
1. 주거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90%)	-	9/139	73.7	-	38/139	84.8
	난방	읍 도시가스보급률(50%)	36.2	27/137	16.8	44.7	33/136	22.3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시(여부)	1.1	140/140	1.2	1.5	139/139	1.5
	마을 공동시설	운영비 지원(100%)	81.2	51/140	82.7	89.2	51/138	89.3
		프로그램 지원(100%)	26.5	14/140	28.7	28.4	20/138	33.2
2. 교통	상수도	면 상수도보급률(75%)	51.5	19/140	49.2	56.1	28/139	53.6
	하수도	하수도보급률(71%)	73.2	46/140	59.2	74.1	51/139	62.0
	대중교통	일 3회 대중교통 이용(100%)	82.4	3/140	80.9	90.4	1/139	90.1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여부)	25.9	36/139	-	35.5	49/138	-
	여객선	본도에 1일 1회 왕복 여객선(100%)	97.4	10/11	-	97.4	10/11	-
3. 교육	인도	인도 구분 설치(100%)	19.0	9/135	31.6	14.0	8/138	26.7
	유치원/ 초·중학교	적정규모학교 육성(100%)	6.7	0/136	5.8	8.9	0/136	8.1
		직접한 통학수단 제공(100%)	-	-	-	97.8	75/79	95.8
	고등학교	우수 고등학교 육성(유무)	85.7	120/140	1.1 (개소)	86.3	120/139	1.1 (개소)
	폐교	폐교사설 재활용 의견 수렴(100%)	97.8	70/71	98.9	95.7	74/79	98.4
4. 보건 의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70%)	72.4	118/140	81.1	82.8	132/139	87.3
		의견수렴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여부)	60.7	85/140	-	66.7	92/138	-
	평생교육	읍·면별 평생교육 거점시설 (100%)	18.9	1/140	20.8	19.8	1/139	21.7
	진료서비스	모든 중요과목 의사 진료(여부)	79.4	108/136	-	78.3	108/138	-
	순회방문	마을별 월 1회 전문인력 순회방문(100%)	0.2	0/140	0.2	6.7	8/138	9.4
5. 복지	의약품구입	자동차 20분 내 일반의약품 구입(100%)	99.6	135/140	99.6	99.6	133/139	99.4
	노인	도움 필요한 노인 주 1회 이상 체가노인복지서비스(100%)	27.3	0/137	32.2	27.1	0/138	32.2
	청소년	자동차 30분 내 청소년센터(유무)	89.3	125/140	2.7 (개소)	91.4	127/139	2.8 (개소)
	아동	자동차 20분 내 초등생 방과후돌봄시설(100%)	97.9	121/140	98.0	98.0	119/139	98.1
	영유아	자동차로 20분 내 소규모 보육시설(100%)	69.9	33/140	72.2	67.9	21/138	69.4
6. 용급	다문화가족	자동차 30분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유무)	78.6	110/140	-	94.2	131/139	-
		방문서비스 제공(여부)	90.9	100/110	-	99.3	138/139	-
	응급서비스	구급차 30분 내 도착(100%)	99.8	125/140	99.6	99.5	95/139	99.3
	소방서비스	5분 내에 소방차 현장 도착(55%)	51.4	59/138	52.4	52.3	59/139	53.9
	도난방지	마을별 도난방지 CCTV 설치(100%)	11.0	0/138	11.5	20.2	0/138	21.8
		항포구 도난방지 CCTV 설치(100%)	5.0	0/48	11.2	7.2	0/48	16.2
	경찰서비스	112신고 시 출동시간 10분 이내(100%)	100.0	139/139	-	100.0	139/139	-

분야	항목	달성 기준(목표치)	2011			2012		
			달성을률 (%)	달성 시·군 수	단순평균 달성을률 (%)	달성을률 (%)	달성 시·군 수	단순평균 달성을률 (%)
7. 문화	독서	읍·면 내 도서 열람/대출(100%)	52.2	16/140	54.2	43.2	4/139	45.2
		접근성이 낮은 지역 대안서비스(유무)	42.1	59/140	-	47.1	65/138	-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 30분 내 문화시설(유무)	98.6	138/140	1.8 (개소)	98.6	137/139	1.9 (개소)
		월 1회 문화프로그램 관람 가능(여부)	46.1	53/115	3.7(회)	55.4	77/139	3.2(회)
		분기별 1회 전문 공연 관람 가능(여부)	70.0	98/140	13.5(회)	75.5	105/139	15.9(회)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연 2회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100%)	14.0	2/137	16.4	30.2	18/138	33.5
8. 정보통신	초고속망	초고속망 구축률(100%)	99.7 (67.9)	-	58.7	99.7 (67.5)	-	57.2
		광대역통합망 구축률(80%)	87.0 (61.5)	7/140	50.3	87.0 (61.2)	3/139	48.9

주: 다음과 같은 5개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비교에서 제외되었음.

- 법률에 의한 의무적인 기준 2개는 이미 달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행실태 점검에서 제외
- 도서·벽지에 대한 응급서비스 관련 (세부)기준 2개는 시·도별 선박 및 헬기를 통한 응급의료체계로서 시·군별 구축 현황과 그로 인한 효과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비교에서 제외
- 2012년에 새롭게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폐교 시 적절한 통학수단 제공’의 기준은 비교가 불가능하여 제외

한편, 본 연구는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지역 적합성과 달성 가능성, 그리고 농어촌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만족도 및 정책 수요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기간(2015-19)에 시행을 고려할 중·장기적인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동 중·장기 개정안에 대한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사무국의 검토와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2013년에 시행할 농어촌서비스기준 최종 수정안을 <표 3>과 같이 제시하였다. 2013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수정안은 현행 8개 부문 31개 항목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을 9개 부문 32개 항목으로 재구성하였다. 현행 기준 항목의 일부를 부문 간 조정하여 ‘안전’ 부문을 신설하고 이에 ‘경찰순찰’, ‘방범설비’(현행 CCTV), ‘경찰출동’(현행 경찰서비스) 항목을 포함시켰다. 동 수정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별표(농어촌서비스 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표 3. 2013 농어촌서비스기준 수정안

부문	항목	세부내용
주거 (5)	가.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기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한다.
	나.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50% 수준으로 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다. 마을 공동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라. 상수도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5% 이상으로 한다.
	마.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을 71% 이상으로 한다.
교통 (3)	가. 대중교통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나. 여객선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다. 보행안전	읍·면 소재지로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에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보도(歩道)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확보한다.
교육 (6)	가. 유치원/ 초·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나. 고등학교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다. 폐교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라. 방과후학교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마. 의견수렴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바. 평생교육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보건 의료 (3)	가. 진료서비스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가 가능하다.
	나. 순회방문	의료 접근성이 낮은 마을에서는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 전문인력의 순회 방문을 받는다.
	다. 의약품구입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부문	항목	세부내용
복지 (5)	가.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나. 청소년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다. 아동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라.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마. 다문화 가족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불편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응급 (3)	가. 응급 서비스	응급환자 발생시 기본적인 응급 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나. 도서·벽지 응급서비스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다. 소방 서비스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 이상으로 한다.
안전 (3)	가. 경찰순찰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순찰을 실시한다.
	나. 방범설비	절도, 강도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다. 경찰출동	112 신고 시 출동시간을 10분 이내로 한다.
문화 (3)	가. 독서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나.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다.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정보 통신 (1)	초고속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IPTV시청이 가능한 광대역통합망 구축률을 80% 이상으로 한다.



## ABSTRACT

###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Rural Services Standard

The Rural Services Standard is a set of national service standard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to set the types of public services and their quality levels required for rural residents to lead daily lives. Every year since 2011 when the standard was enforced in earnest,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has been examining and evalua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standard as entrusted by the government. Under such a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examine and evalu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rural services standard.

The examination and evaluation of how the rural services standard was implemented in 2012 consists mostly of two parts. The first part covers the implementation of common rural services that are implemented annually,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standard is examined and evaluated using the examined statistics and the implementation index used for 2011. The second part, on the other hand, covers the implementation of annual special services, and it consists of an extensive research into rural roads and transportation and a plan to improve the rural services standard.

The examination and evaluation results of how well the rural services standard were implemented in 2012 show an overall improvement compared to 2011. Specifically, the number of rural services standard that were better implemented stands at 29, whereas three remained stagnant and four deteriorated. The housing standards showed an overall improvement, whereas one case of worse standard implementation could be seen in each one of the following categories: education, welfare, emergency, and culture.

The current state of implementing rural services standard was examined for each government ministry, and the results showed that it deteriorated in the following fields: closing down of schools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reading promotio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fant car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emergency servic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But, with the exception of the above service standards, most service standards were implemented better than the ones in the previous year.

This study analyzed the regional suitability and achievability of the current services standard, as well as the public service satisfaction level of rural residents and

policy deman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and after consultations with the Life Quality Improvement Committee and the Rural Services Standard Council, a final revision plan is set up for the services standard which will be implemented in 2013. In the revised plan, the current service standard are reconstructed to consist of 32 service types in 9 categories from the current 31 service types in 8 categories. A new category of 'safety' is added to the standard along with the three service types of 'police patrol', 'crime prevention equipment (currently 'theft prevention'), and 'police dispatch (currently police service)'.

Researchers: Kwang-Sun Kim, Jong-Hyun Chae and Byeong-Seok Yoon.

Research Period: 2012.5~2012.12

E-mail Address: yeskkskim@krei.re.kr

## 제 1 장

### 서 론

#### 1.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개념과 이행실태 점검·평가의 목적

##### 1.1.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개념과 제도화 현황

- 농어촌은 지역 특성상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초 서비스에 대한 공급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농어촌은 인구의 과소화와 분산 분포로 인해 시장에 의한 서비스 공급과 공공에 의한 서비스 공급에서 모두 상당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 이러한 이유로 농어촌 주민들은 도시 주민들에 비해 삶의 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 공급에 있어 상대적 박탈을 경험하고 있다.
- 특히, 농어촌 지역에 대한 기존의 공공서비스 공급은 농어촌이라는 지역 특성이 무시되거나 수요자 관점 보다는 공급자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 이로 인해 범부처적인 막대한 정책 투자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은 여전히 공공서비스 공급의 낙후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 농어촌 주민들 역시 정부의 투자로 인한 공공서비스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였다.

-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정부는 우리 국민이 도시에 살든 농어촌에 살든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삶의 질 수준을 ‘농어촌서비스기준’이라는 국가적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s) 항목과 수준’을 의미한다 (학술적 개념).
  - 모듬살이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되는 가정과 마을 공동체를 결합한 ① 주거 부문; 사회적 소통과 물자의 이동을 통해 삶을 지원하는 ② 교통 부문; 삶에 대한 보호와 안전을 제공하는 ③ 보건의료 부문, ④ 복지 부문, ⑤ 응급 부문;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⑥ 교육 부문과 ⑦ 문화 부문; 그리고 이들 서비스 전달의 대안적 수단을 제공하는 ⑧ 정보통신 부문의 8대 부문이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 서비스 분야로 인식되었다.
-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법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 명의로 고시하였다.
  - 2009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지역별 공청회, 국회 토론회, 영국 및 독일 현지 조사 등 다양한 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8대 부문 31개 기준 항목을 도출하였다.
  - 2010년 7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을 개정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동 법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업인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로 정의하고 있다(법적 개념).
  - 이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동 법을 시행하면서 시행령에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를 제시하고, 그 ‘세부 내용’을 농

림수산식품부 고시로 발표하였다(표 1-1 참조).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운용 목적은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44조에 따르면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데 있다.
  - 이를 위해 동 법은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수립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 평가 시에도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역시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때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즉,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을 근거로 「삶의 질 향상 계획」에서 달성해야 할 계획 목표로 수립하고 이의 이행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을 위해 법부처 협의체인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와 전문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자문기구이다. 동 협의회는 위원장(삶의 질 향상 위원회 사무국장)을 포함해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및 농어촌 주민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운용, 달성을 평가 등에 대해 삶의 질 향상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자문에 응답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44조제5항과 제46조제1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근거해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 4월 1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점검·분석 및 삶의 질 향상 계획의 추진과 관련된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표 1-1.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세부 내용

부문	항목	세부 내용
1. 주거	가.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한다.
	나.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50% 수준으로 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 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다. 마을공동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라. 상수도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5%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는 원수의 수질을 검사하고, 먹는 물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
	마.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을 71% 이상으로 한다.
2. 교통	가. 대중교통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나. 여객선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다. 인도(人道)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 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교육	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고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나. 고등학교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다. 폐교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재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라. 방과 후 학교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마. 의견 수렴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바. 평생교육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4. 보건 의료	가. 진료 서비스	시·군 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가 가능하다.
	나. 순회방문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의 전문 인력의 순회 방문을 받는다.
	다. 의약품 구입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5. 복지	가.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나. 청소년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부문	항목	세부 내용
6. 응급	다. 아동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 후 돌봄 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라.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마. 다문화가족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 불편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 응급 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 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나. 도서·벽지에 대한 응급 서비스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다. 소방 서비스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 이상으로 한다.
7. 문화	라. 도난 방지	도난방지 등을 위한 방법용 CCTV가 주요 간선도로 길목에 설치되어 있다.
	마. 경찰 서비스	112 신고 시 출동시간을 10분 이내로 한다.
	가. 독서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8. 정보 통신	나.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다.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가. 초고속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IPTV 시청이 가능한 광대역통합망 구축률을 80% 이상으로 한다.	

주: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5호.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삶의 질 향상계획 체계 내에서 수립되고 추진되도록 제도화되어 있어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각 항목별 목표치는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추진이 종료되는 2014년까지 달성해야 할 정책 목표라 할 수 있다.
  - 현행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은 5년마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을 포함한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을 정도를 함께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목표 달성 연도 등을 포함한) 운용 주기 역시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2014년까지인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 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의 목적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그 법적 근거의 마련과 운용을 위한 삶의 질 향상 계획 체계 내 수용에도 불구하고 그 달성을 여부는 의무 사항이 아닌 노력·권고 사항이다.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그 달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의 이행을 강제할 만한 수단이 없는 설정이다.
  -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이나 지자체계획의 경우는 해당 계획의 수립과 시행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 수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매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제시함으로써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행실태 점검·평가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첫째,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들 중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또는 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자료를 정부 및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합리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 둘째, 달성해야 할 객관적 목표와 현 실태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정부 및 지자체로 하여금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 셋째,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각 농어촌 지자체가 해

당 지역의 실태를 농어촌서비스기준이라는 객관적 기준과 비교해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넷째, 농어촌 주민들이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의 항목과 그 수준이라는 객관적 기준과 함께 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 다섯째, (삶의 질 향상계획과 관련해 한정하면) 삶의 질 향상의 평가 지표로 활용함은 물론, 분석 결과를 예산 편성 및 신규 정책 발굴에 활용할 수 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 점검·평가는 2011년의 경우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44조제5항에 의해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동 법 제46조 등에 의해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 2. 201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주요 결과

### 2.1. 2011 이행실태 점검·평가의 주요 내용과 방법

- 2011년도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기 위해 다차원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 첫째, 이행실태 점검통계를 구축하여 31개 항목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다시 43개의 세부기준으로 구분하고 관련된 50개의 통계를 구축하여 각 세부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였다.
  - 점검통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표통계를 수집하고, 공표통계가 없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조를 통해 내부 자료를 구득하거나 농어촌 시·군·지자체 대상 행정조사를 실시하여 점검통계를 구축하였다.

- 공표통계는 원칙적으로 2010년 기준 통계를 활용하되 2010년 기준 통계가 미 공표된 경우 2009년 기준 통계를 활용하였다. 중앙행정기관 협조 자료는 2011년 9월 시점에서 구득할 수 있는 최신 자료를 구득하였으며, 지자체 행정조사는 2011년 9월에 실시하였다.
- 둘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RSS Implementation Index)를 개발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평가하였다.
  - 이행지수는 종합 이행지수와 부문별 이행지수로 구분하여 전반적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와 부문별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부문 간, 지역 간 비교 가능하도록 제시하였다.
  -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31개 기준 항목 중 농어촌에 보다 중요한 10개의 핵심기준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이행실태를 별도의 핵심 이행지수로 평가하였다.
- 셋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를 바탕으로 클러스터 분석을 실시하여 농어촌지역을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지역 특성을 제시하였다.
  - 농어촌을 공공 서비스형 지역, 소프트웨어 서비스형 지역, 민간 서비스형 지역, 하드웨어 서비스형 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서비스 공급 전략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지역 특성을 제시하였다.
- 넷째, 삶의 질 향상계획이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반영하고 있는 정도를 분석하였다.
  -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0-14)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와 2011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 시·도계획에 대한 내용 분석은 충청남도 삶의 질 향상계획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시·군계획에 대한 분석은 사례지역(화천군·장흥군)에 대한 조사·분석 시 함께 수행하였다.
- 다섯째, 강원도 화천군, 전라남도 장흥군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 삶의 질 향상계획이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어느 정도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농어촌서비스기준 8대 부문별 관련 사업의 예산 투입 현황을 검토하여 각 지자체가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을 위해 어느 정도나 정책적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 화천군의 화천읍과 간동면, 장흥군의 대덕읍과 장평면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와 실시하여 농어촌 주민의 기초생활 터전인 읍·면 단위에서의 공공 서비스 공급 및 전달체계 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 2.2. 2011 이행실태 점검·평가 주요 결과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각 항목별로 달성을 보면 이미 목표치를 달성한 항목이 다수 존재한다.
  - ‘하수도 보급률 71% 이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 70% 이상’, ‘112 신고 시 10분 이내 출동’ 목표치는 이미 달성되었다.
  - ‘폐교시 주민 의견 수렴’, ‘자동차로 20분 내 의약품 구입’, ‘자동차로 20분 내 방과후 돌봄교실 도달’, ‘구급차 30분 내 도착’, ‘자동차로 30분 내 문화시설 도달’ 역시 달성을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다.
  - 그러나 전체 시·군 수 대비 기준 달성 시·군 수로 나타낸 ‘달성 시·군 비율’은 이들 기준 대부분이 여전히 많은 시·군에서 달성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 달성을 특허 낮은 기준 항목(세부기준)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마을별 월1회 전문의료인력 순회방문’ 등으로 나타났다.
  - ‘마을별 월1회 전문의료인력 순회방문’ 기준은 현재 목표치를 달성한 시·군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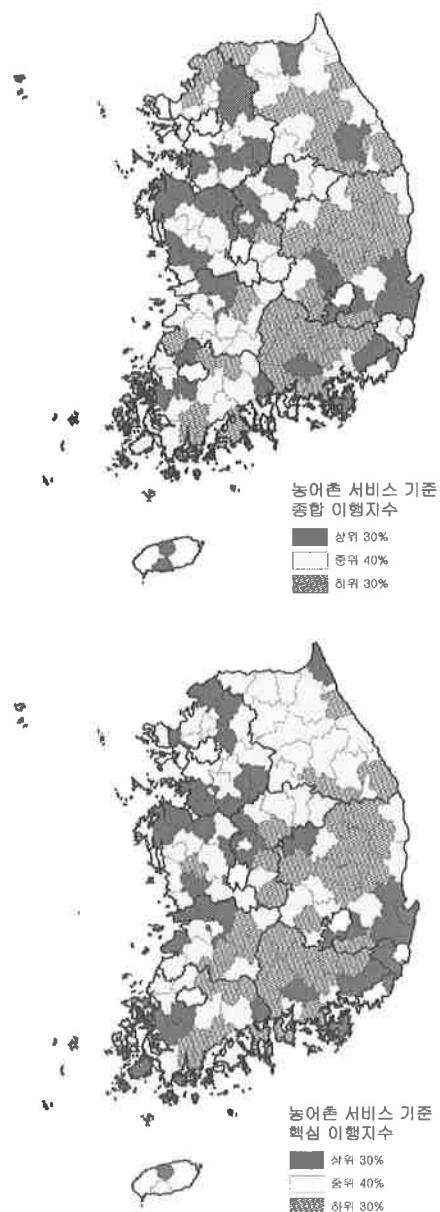
표 1-2. 201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분야	항목	달성 기준(목표치)	달성을률	기준 달성 시·군 수
1. 주거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90%)	76.0%	16/140
	난방	읍 도시가스보급률(50%)	36.2%	27/137
		신재생에너지 보급(100%)	0.6%	140/140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지원(100%)	81.2%	51/140
		프로그램 지원(100%)	26.5%	14/140
2. 교통	상수도	면 상수도보급률(75%)	51.5%	19/140
		하수도보급률(71%)	73.2%	46/140
3. 교육	대중교통	일 3회 대중교통 이용(100%)	82.4%	3/140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100%)	25.9%	36/139
	여객선	본도에 1일 1회 왕복 여객선(100%)	97.4%	10/11
	인도	인도 구분 설치(100%)	19.0%	9/135
4. 보건 의료	유치원/ 초·중학교	적정규모학교 육성(100%)	6.7%	0/136
	고등학교	우수 고등학교 육성(100%)	85.7%	120/140
	폐교	폐교시설 재활용 의견 수렴(100%)	97.8%	70/7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70%)	72.4%	118/140
	의견수렴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100%)	60.7%	85/140
5. 복지	평생교육	읍·면별 평생교육 거점시설(100%)	18.9%	1/140
	진료서비스	중요과목 의사 진료(100%)	79.4%	108/136
	순회방문	마을별 월 1회 전문인력 순회방문(100%)	0.2%	0/140
6. 응급	의약품구입	자동차 20분 내 일반의약품 구입(100%)	99.6%	135/140
	노인	도움 필요한 노인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100%)	27.3%	0/137
		자동차 30분 내 청소년센터(100%)	89.3%	125/140
	청소년	자동차 20분 내 초등생 방과후돌봄시설(100%)	97.9%	121/140
	아동	자동차 20분 내 소규모 보육시설(100%)	69.9%	33/140
	영유아	자동차 30분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100%)	78.6%	110/140
		방문서비스 제공 여부(100%)	90.9%	100/110
응급	응급서비스	구급차 30분 내 도착(100%)	99.8%	125/140
	도서·벽지에 대한 응급서비스	낙도·벽지 헬기·선박 이용 환자 이송체계(100%)	-	-

분야	항목	달성 기준(목표치)	달성을률	기준 달성 시·군 수
7. 문화	소방서비스	5분 내에 소방차 현장 도착비율 55%(100%)	51.4%	59/138
	도난방지	마을별 도난방지 CCTV 설치(100%)	11.0%	0/138
	경찰서비스	112신고 시 출동시간 10분(100%)	100.0%	139/139
8. 정보통신	독서	읍·면 내 도서 열람/대출(100%)	52.2%	16/140
		접근성이 낮은 지역 대안서비스(100%)	42.1%	59/140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 30분 내 문화시설(100%)	98.6%	138/140
		월 1회 문화프로그램 관람(100%)	46.1%	53/115
		분기별 1회 전문 공연 관람(100%)	70.0%	98/140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연 2회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100%)	14.0%	2/137
	초고속망	초고속망 구축률(100%)	99.7% (67.9%)	-
		광대역통합망 구축률(80%)	61.5%	7/140

- 종합 이행지수 값이 높은 지역은 대부분 대도시 인근 지역들이다. 종합 이행지수 상위 30% 지역(42곳)은 대부분 수도권 지역과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대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 정도를 종합한 종합 이행지수의 값이 높은 상위 10개 지역은 정선군, 계룡시, 아산시, 연기군, 이천시, 달성군, 보령시, 남양주시, 경산시, 진천군 등이다. 10개 시·군 중 6개 지역이 도농복합시이고 4개 지역은 군 지역이다.
- 종합 이행지수 값이 낮은 하위 30% 지역(42곳)은 대부분 경상도, 강원도 지역에 산재하여 분포되어 있다. 반면 경기도와 충청도 등 수도권 인근에는 하위 30%에 속하는 지역이 거의 분포하지 않는다. 전라도 지역도 경상도와 강원도에 비해 하위 30% 지역의 수가 적다.
  - 종합 이행지수 하위 10개 농어촌 지역은 하동군, 의령군, 철원군, 성주군, 의성군, 합천군, 함안군, 산청군, 울릉군, 거창군 등이다. 대부분 군 지역이며, 전형적인 농어촌 오지 지역으로 평가되는 지역들이다.

그림 1-1. 2011 농어촌서비스기준 종합  
이행지수와 핵심 이행지수 분포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개의 핵심 농어촌서비스기준(핵심 기준)을 선정하였다.
  - 주거 부문 3개 항목(주택, 난방, 상수도), 교통 부문 1개 항목(대중교통), 교육 부문 2개 항목(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보건의료 부문 1개 항목(진료서비스), 복지 부문 2개 항목(아동, 영유아), 응급 부문 1개 항목(응급 서비스)이 선정되었다.
  - 문화 부문과 정보통신 부문의 항목들은 핵심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
- 핵심 이행지수의 공간적 분포는 종합 이행지수의 경우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핵심 이행지수 상위 30% 시·군들은 주로 대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종합 이행지수의 분포와 비교할 때 수도권에의 상위권 지역 집중이 다소 완화되었다. 대신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등 지방 대도시로의 집중이 보다 강화되었다.
  - 핵심 이행지수 값이 큰 상위 10개 시·군은 연기군, 이천시, 진주시, 김해시, 기장군, 서산시, 아산시, 청원군, 경주시, 달성군 등이다.

### 2.3. 2011 주요 정책 제안

- 201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 <표 1-3>과 같이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복지 부문과 관련한 몇 가지 주요 정책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 주거 부문과 관련해서는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 공급을 위해 신규주택 공급 정책과 빈집 개량 정책을 혼합하는 전략을,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정책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촉진하는 난방비 절감 방안 마련을 보다 비중 있게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 교통 부문과 관련해서는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체계의 개발과 보급, 그리고 농어촌 도로 위험구간 및 사고다발구간에 대한 인도 우선 설치를 제안

하였다.

- 교육 부문과 관련해서는 적정 규모의 학교 육성만이 능사가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소규모학교 역시 육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외에도 유휴시설을 활용한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거점 마련과 여성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보건의료 부문과 관련해서는 농어촌 1차 진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농어촌 의료생협을 육성하고, 오지마을 중심의 의료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순회방문을 집중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 복지 부문과 관련해서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해 취약지역에 방문간호기관 및 요양보호사를 집중 육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표 1-3. 부문별 정책 제안

부문	주요 정책 제안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의 신규 건설과 농어촌 빈집 개량 전략의 혼합 추진</li> <li>- 도시가스 공급계획 미수립 농어촌 시·군에 난방비 절감 방안 마련</li> </ul>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준공공 교통프로그램 및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의 개발과 보급</li> <li>- 농어촌 도로 위험구간(사고다발구간)에 대한 인도 우선 설치 지원</li> </ul>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화·다양화·특성화에 의한 농어촌학교 육성과 적절한 통학수단 제공(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복수학교 공동 운영, 학교클러스터 구축 등)</li> <li>- 기존의 지역 유휴시설을 활용한 주민 평생교육 거점 마련과 프로그램 지원</li> <li>- 농어촌 주부, 또는 여성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li> </ul>
보건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진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농어촌 의료생협 육성</li> <li>- 오지마을 중심의 의료 취약지역 선정과 순회방문 집중 지원</li> </ul>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움이 필요한 노인 주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기준 이행 촉진 위해 취약지역에 방문간호기관 및 요양보호사 육성</li> </ul>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크게 네 가지 사항을 제안하였다(표 1-4).
  - 첫째, 영국의 ‘지방 공공서비스 협약’과 같이 중앙-지방 간 협약제도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적절한

보상체계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둘째, 삶의 질 향상계획이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보다 실질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계획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셋째, 농어촌서비스기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이행 정도가 달라지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각 지자체의 노력인 만큼, 농어촌 서비스기준 관련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한 각 지역의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하여 타 지역에서도 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고무할 필요가 있다. 또 각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별, 항목별 이행실태가 특히 저조한 지역을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넷째, 재정상황이 열악하고 물적·인적 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종합 이행 지수와 핵심 이행지수가 모두 하위 30%에 속하는 시·군의 공공서비스 공급을 집중 지원하는 (가칭)‘농어촌 삶의 질 향상 촉진지역’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표 1-4.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독려 방안

구분	주요 내용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의 ‘지방 공공서비스 협약’(Local Public Service Agreement)과 같은 중앙-지방정부 간 협약제도를 체결하고 그 이행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li> </ul>
삶의 질 향상계획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농어촌서비스기준 반영</li> <li>- 지자체 역시 삶의 질 향상계획에 대한 보완을 통해 자체의 서비스기준 추진 및 달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촉구</li> </ul>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 발굴·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별, 항목별 이행지수가 특히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각 부처의 관련 정책 우선 추진</li> <li>-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별, 항목별로 관련된 모범사례 지속적 발굴, 제시</li> </ul>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저위(低位) 지역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 이행지수와 핵심 이행지수가 모두 하위 30%에 속하는 시·군의 공공서비스 공급을 집중 지원하는 (가칭)‘농어촌 삶의 질 향상 촉진지역’ 제도 도입</li> <li>- 대상 지역에 영국의 지방 공공서비스 협약과 같은 제도 추진</li> </ul>

- 향후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조직적 대응이 필요하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실태조사와 정책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 조직적 대응을 위해서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운영하는 사무국의 기능이 보다 강화되어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에 실질적인 행정력이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한다.
  - 심층적인 실태조사 및 정책 방안 연구를 위해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별 또는 항목별로 보다 심층적인 실태조사와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표 1-5. 향후 제도 운영 방안

구분	주요 내용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사무국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리실 국무차장이나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삶의 질 향상 기획단’ 설치·운영</li> <li>- 관련법 개정을 통해 기획단의 설치·조직구성·기능·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부처,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li> </ul>
삶의 질 향상 정책 연구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가칭)‘삶의 질 향상 정책 연구지원센터’를 전문연구기관 내에 설치하여 운영</li> </ul>
분야별 심층 조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서비스기준 주요 분야별로 보다 심층적인 조사·분석과 정책 대안 마련</li> </ul>

- 2011년도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한 첫 해이므로 기준 자체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 역시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향후 농어촌서비스기준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자체의 개선은 <표 1-6>과 같이 기준의 조정, 점검 주기의 조정, 지자체의 자율적인 기준 설정 유도, 불명확한 기준의 명료화, 이행실태 점검 내용에 대한 보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표 1-6. 농어촌서비스기준 보완 사항

구 분	기준 항목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 개선 방향
기준 조정	순회방문	서비스 공급 대상을 전체 마을에서 오지마을로 조정
	도서·벽지 응급서비스	응급서비스 기준 항목의 세부기준으로 편입
	유치원/초·중교 (적정규모 학교 육성)	'지역화·다양화·특성화에 의한 농어촌 학교육성'이라는 기준으로 전환
점검 주기 조정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 관련 통계의 조사·공표 주기에 부합하도록 5년마다 이행실태 점검
	대중교통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를 통해 5년 주기로 조사되나 대중교통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년마다 행정조사 및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이행실태 점검
자율 설정 유도	인도설치	지자체가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구간(사고 다발 지역)부터 우선 설치하도록 기준의 자율 설정 유도
	난방	도시가스 보급계획 미수립 지자체를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준으로 자율적 대체 가능토록 조치
기준 명료화	방과후학교	교과부에서 방과 후 학교 참여율 산정기준 제공 필요 * 현재는 참여 프로그램의 수나 참여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이행실태 점검
	유치원/초·중교 (적정규모 학교 육성)	통폐합 학교 학생들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는 기준내용을 '학생들의 이동시간 상한'도 함께 고려하도록 구체화
이행 실태 점검 보완	폐교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문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여부 점검 필요(2012년 이행실태 점검 시 시행)
	경찰서비스	행정리별 112 신고 후 경찰의 현장 도착 시간 통계 구축 필요(현재는 시·군 단위 통계 구축)
	초고속망	행정리별 인터넷 초고속망 및 광대역통합망 구축 현황 통계 필요(현재는 가입자 수 통계 활용)

### 3. 20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방향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근거법을 마련하고 관련 계획체계 내에서 시행하도록 제도화되었지만 그 이행에 법적 강제성이 없어 다양한 방법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이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이유로 2011년 이행실태 점검·평가 시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는데, ① 점검통계를 활용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②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종합·부문별 이행지수, 핵심 이행지수)를 활용한 이행실태 평가, ③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삶의 질 향상 계획 반영 실태 분석, ④ 사례지역 심층조사 등을 관련 위탁 업무로 계획하여 추진하였다.
- 2011년 한 해 동안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운용하면서 지적된 사항이나 개선 필요를 수용하기 위해 2012년에는 다소 개편된 방법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였다(표 1-7).
  - 점검통계를 활용한 이행실태 점검과 이행지수를 활용한 이행실태 평가는 연차별 공통 업무로 2011년과 동일하게 추진하되 구체적인 방식에서는 일부 합리화를 시도하였다.
  - 소수의 특정 시·군 전체를 심층사례로 조사하는 것보다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별 또는 항목별로 관련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모범사례를 다양하게 발굴하여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분야별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모범사례 발굴과 이러한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체계 구축의 사례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sup>1)</sup>
  - 연차별로 농어촌서비스기준 특정 부문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실태 분석과 정책 방안 제시를 추가하였다.

---

1) 모범사례 발굴 부분은 추후 별도의 자료집으로 발간할 예정임.

- 2011년 처음으로 시행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이유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구체적인 항목 및 내용에 대한 조정을 위해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현장 적합성, 목표 달성 가능성, 관련 공공서비스에 대한 농어촌 주민 만족도와 정책 수요 조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밖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표 1-7. 2011/20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추진 방법 비교

업무 구분	201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추진 방법	20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추진 방법
연차별 공통 추진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점검통계를 활용한 농어촌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식통계 구축</li> <li>② 부처 협조를 통한 통계 구득</li> <li>③ 지자체 행정조사 실시</li> </ul> </li> <li>(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종합·부문별 이행지수</li> <li>② 핵심 이행지수</li> <li>③ 클러스터 분석</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점검통계를 활용한 농어촌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식통계 구축</li> <li>② 부처 협조를 통한 통계 구득</li> <li>③ 지자체 행정조사 실시</li> </ul> </li> <li>(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종합·부문별 이행지수</li> <li>② 핵심 이행지수</li> </ul> </li> </ul>
연차별 특별 추진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삶의 질 향상 계획 반영 실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본계획 분석</li> <li>② 2011년 시행계획 분석</li> <li>③ 시도계획(충남), 시군계획(화천군·장흥군) 심층 분석</li> </ul> </li> <li>(4) 사례지역 심층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시·군 단위 삶의 질 향상계획 분석</li> <li>② 기준 항목 관련 사업예산 분석</li> <li>③ 읍·면 단위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조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농어촌서비스기준 주요 부문별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농어촌 도로·교통 부문</li> </ul> </li> <li>(4)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농어촌서비스기준 현장 적합성 및 달성 가능성 조사</li> <li>② 농어촌 주민의 공공서비스 만족도 및 정책 수요 조사</li> </ul> </li> <li>(5)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모범사례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의 자료집 발간</li> </ul> </li> </ul>



## 제 2 장

### 2012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 1. 이행실태 점검의 개요

##### 1.1. 이행실태 점검 방법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2014년까지 농어촌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정책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그 이행실태를 매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이행실태 점검에서는 각 항목별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목표치를 개별 농어촌 시·군에서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를 파악한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관련 통계(점검통계)를 활용하는데, 원칙적으로 점검통계의 기준연도를 직전 연도로 설정하였다.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11년 기준의 통계를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2011년 기준의 통계가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경우 2010년도 통계를 활용한다.
    - 예를 들어 도시가스 보급률, 방과후학교 참여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등의 통계는 2011년 기준의 통계를 활용하

며, 상하수도통계, 전국사업체조사 등 아직 2011년 기준 통계가 공표되지 않은 경우 2010년 기준의 통계를 활용한다.

- 지자체 행정조사의 경우 2012년 8월 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해당 결과는 2012년 7월 기준의 실태라 할 수 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각 서비스기준에 따라 달성되어야 하는 지역단위가 다양하며, 이에 따라 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단위의 통계가 필요하다.

- 농어촌서비스기준마다 달성되어야 하는 지역단위가 시·군, 읍·면, 행정리 등 다양하며, 이에 따라 각 시·군별로 총 인구 및 가구, 읍 또는 면 지역 가구, 읍·면 수, 행정리 수 등을 기준으로 각 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계산한다.
- 예를 들어 ‘하수도 보급률 71% 이상’의 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군의 하수도 보급률을 파악하면 되지만,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75% 이상’에 대해서는 시·군별 면부 가구와 면부 상수도 보급 가구를 알아야 한다. 또한 ‘공동시설프로그램 지원’과 같은 경우 각 행정리의 공동시설 현황과 이에 대한 지원 여부가 조사되어야 한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의 대상은 전국 139개의 도농복합시 및 군으로 하며, 필요 시 도농복합시의 경우 동지역을 제외하고 점검하였다.

- 현재 농어촌 시·군은 기존의 마산시가 2010년 7월부로 창원시와 통합됨에 따라 총 139개 시·군이다.
- 또한 충남 연기군이 2012년 7월 1일 부로 세종특별시에 편입됨에 따라 138개 시·군이 되었다. 이에 따라 연기군에 대해서는 지자체 행정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13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
- 충남 당진군은 2012년 1월 1일 부로 도농복합시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점검통계의 기준 시점이 대부분 그 이전으로 지역별 이행실태 점검·평가 시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군지역으로 간주하였다.

## 1.2.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필요 통계 현황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크게 8개 부문, 31개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 기준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한 개 이상의 세부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8개 부문, 31개 기준, 44개 세부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 예를 들어 복지 부문 다문화가족 항목의 서비스기준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 불편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의 경우, ① ‘자동차로 30분 내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 접근’과 ② ‘교통 불편 지역의 경우 (다문화가족 지원) 방문서비스 제공’의 두 가지 세부기준으로 구분된다.
- 44개 세부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총 51개 통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공식통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자료 협조와 지자체를 통한 행정조사가 필요하다(표 2-1).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통계 구축에 있어 공식통계로 구득이 가능한 것은 12개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협조(각각 23개, 14개)가 필요하다.
  - 주거 및 교통 부문의 2개 세부기준의 경우 법률에 의한 의무적인 사항으로서, 이는 이미 달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 주거 부문: 기초지자체의 원수 수질 검사 및 수질 관리(「수도법」)
    - 교통 부문: 도서지역 거주민의 여객선 운임 일부 지원(「삶의 질 향상 특별법」, 「해운법」)
- 2011년도 이행실태 점검에서는 8개 부문, 31개 기준, 43개 세부기준이었으며, 50개의 통계가 필요했다. 2012년 이행실태 점검에서는 세부기준을 44개로, 필요 통계를 51개로 조정하여 점검하였다.
  - 교육 부문의 유치원/초·중학교 항목의 서비스기준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고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를 ① 적정규모학

교 육성계획에 의거하여 적정규모로 통폐합, ② 폐교 시 적절한 통학수단 제공 등 2개 세부기준으로 구분하였다.

표 2-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현황

8개 부문	서비스 기준	세부 기준	통계 확충 범위	구득 가능 통계	통계 보완			비고
					중앙행정기관 협조		지자체 협조	
					공간단위 수정	내부자료/ 신규조사	행정 조사	
주거	5	8	9	3	1	2	2	1*
교통	3	5	5	1	0	1	2	1*
교육	6	7 <sup>2)</sup>	7	0	1	5	1	-
보건의료	3	3	4	2	0	0	2	-
복지	5	6	10	4	1	1	4	-
응급	5	7	8	0	0	7	1	-
문화	3	6	6	2	1	1	2	-
정보통신	1	2	2	0	0	2	0	
계	31	44	51	12	4	19	14	2

주 1) \*는 법률에 의한 의무로서 이미 달성한 것으로 간주한 항목을 의미함.

2) 초고속망 구축률은 실제로는 원한다면 전국 어디서든 가입이 가능하나, 통계 구축이 필요한 사항임.

2) 교육 부문 서비스기준은 2011년까지 6개 항목, 6개 기준, 6개 세부기준(6개 통계)였음. 그러나 2012년부터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폐교 시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해야함’을 세부기준으로 분리하였으며, 이에 따라 6개 항목, 6개 기준, 7개 세부기준(7개 통계)으로 변경되었음.

표 2-54.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시·도별 달성을 비교

분야	항목	세부기준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단위: %
1. 주거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 90% 이상	92.4	85.2	86.5	89.1	85.1	86.3	76.0	81.4	86.7	
	난방	온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50% 이상	69.1	13.8	31.5	45.8	14.4	20.7	42.2	33.5	0.0	
	마을 공동시설	신체상에너지 보급 운영비 지원 프로그램 지원	1.2	1.2	2.2	1.5	1.7	1.5	1.2	1.9	0.5	
	상수도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75% 이상	82.9	92.2	96.3	95.4	90.6	92.7	91.2	73.4	100.0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 71% 이상	19.1	48.0	21.9	34.1	19.0	28.7	15.6	49.7	0.0	
	대중교통	도보 15분 내 청류장에서 일 3회 이용 가능	66.8	49.5	51.1	43.2	68.1	46.0	51.7	62.4	100.0	
	교통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	79.3	79.2	61.1	64.6	72.1	66.4	66.1	83.6	87.1	
	인도	도시지역 본도에 1일 1회 양복 여객선 운행	95.8	88.7	89.7	92.5	93.2	89.6	85.2	88.0	93.0	
	유치원/초등학교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 시 치도와 구분된 인도 설치 적정규모로 통폐합	25.3	23.7	14.6	25.8	7.8	10.8	6.7	21.2	18.6	
	고등학교	적절한 통학수단 제공 교과부 선정 우수고교 및 기숙형 고교 1개교 이상 육성	5.2	7.3	6.6	6.6	3.2	16.9	11.0	5.9	7.1	
	체육	체교 시 폐교재산 활용과 관련한 공정회 등 통해 지역주민 의견 수렴	(0.9%) 교	(1.27%) 교	(1.27%) 교	(1.27%) 교	(1.07%) 교	(1.17%) 교	(1.17%) 교	(1.17%) 교	(0.07%) 교	

분야	항목	세부기준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학생의 70% 이상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69.4	78.4	93.3	85.6	90.6	85.4	92.8	90.1	87.6
의견수렴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별 전위위원회를 설치	73.3	66.7	54.5	73.3	38.5	71.4	87.0	55.6	100.0	
평생교육	음·문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시설 1개 이상 운영	43.2	24.6	19.4	21.6	11.9	14.8	15.1	14.7	41.7	
	진료 서비스	일반병의원, 한방병원의원, 산부인과, 치과, 물리치료 가능	100.0	66.7	81.8	100.0	76.9	66.7	65.2	77.8	100.0
4. 보건 의료	4. 순회방문 마을별 집합장소에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순회방문	8.2	6.7	2.1	7.1	11.3	7.0	3.6	3.7	100.0	
	의약품 구입	음·면 내 의약품 구입 가능	98.6	98.2	100.0	99.4	99.4	100.0	100.0	100.0	100.0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	24.4	28.3	38.6	24.5	26.3	25.6	29.6	24.9	39.3	
청소년	시·군 내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100.0 (4.9개소)	93.3 (3.0개소)	100.0 (2.6개소)	87.5 (1.9개소)	100.0 (3.0개소)	81.0 (1.5개소)	87.0 (1.9개소)	94.4 (3.0개소)	100.0 (13.5개소)	
	5. 복지	음·면 내 지역아동정보센터 또는 초등돌봄시설 운영	97.1	97.4	100.0	99.4	98.3	94.1	100.0	100.0	100.0
영유아	음·면 내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최소 3명 이상일 때 (소규모)보육시설 운영	89.9	72.8	68.9	74.8	59.7	64.6	62.2	57.9	100.0	
다문화 가족	시·군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해당 방문서비스 제공 여부	100.0 (1.0개소)	73.3 (0.7개소)	100.0 (1.0개소)	93.8 (0.9개소)	100.0 (1.0개소)	90.5 (0.9개소)	100.0 (1.0개소)	100.0 (1.1개소)	100.0 (1.0개소)	

분야	항목	세부기준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6. 응급 서비스	응급 서비스	30분 내 응급현장 도착	99.5	99.0	99.8	99.7	99.3	99.1	99.7	99.7	100.0
	소방 서비스	신고 접수 후 화재현장 도착 비율 55% 이상	40.6	46.9	78.1	67.6	68.7	60.2	47.6	37.4	72.0
	도난방지 장치	주요 간선도로 길목 및 마을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 설치 양식장 등 어산물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	25.8	24.3	34.8	24.1	18.6	10.8	17.7	19.4	19.8
	경찰 서비스	신고 접수 후 10분 이내 현장 도착	57.1	45.3	-	20.2	21.4	3.6	15.2	3.8	9.1
7. 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	도서	읍·면 내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도서 열람/대출 가능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대안서비스 현황	61.2	40.4	43.7	42.7	36.5	41.5	35.3	45.7	83.3
	도달	시·군 내 문예회관 등 문화시설 도달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 관람	100.0 (1.87개소)	100.0 (1.77개소)	100.0 (2.0개소)	93.8 (2.0개소)	100.0 (1.97개소)	100.0 (1.67개소)	100.0 (1.97개소)	100.0 (1.8개소)	100.0 (2.0개소)
	프로그램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 관람	53.3 (2.1회)	46.7 (2.2회)	63.6 (5.2회)	56.3 (3.8회)	61.5 (6.2회)	61.9 (3.8회)	52.2 (2.6회)	44.4 (1.7회)	100.0 (2.0회)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읍·면별로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연 2회 이상의 문화프로그램 향유	66.7 (16.8회)	80.0 (14.5회)	72.7 (8.4회)	93.8 (14.0회)	84.6 (15.7회)	57.1 (8.8회)	82.6 (19.5회)	83.3 (24.1회)	50.0 (60.3회)
8. 정보 통신	초고속망 구축률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연 2회 이상의 문화프로그램 향유 초고속망 구축률 100%	47.5	36.0	43.7	19.0	30.2	38.9	16.4	19.8	100.0
	광대역통합망 구축률 80% 이상	68.1	65.1	61.9	65.0	54.0	49.7	55.2	63.4	59.2	64.5